KOSHA GUIDE

C - 93 - 2013

5. 우물통기초 시공 전 안전조치 사항

- (1)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에 관련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안 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교육하여야 한다.
 - (가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
 - (나)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지반의 굴착작업
 - (다) 중량물의 취급작업
 - (라) 우물통기초의 설치작업
- (2) 단위공종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단위작업 별 허용 가능한 위험범위 이내가 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한 후가 아니면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, 기록, 표시하여야 하며, 인접 제반 시설물의 관계기관에게 확인시킨다.
- (4)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사용지 사용 확보
 - (나) 공사용 자재 운반, 적치
 - (다) 지질층 시추조사표 검토
 - (라) 시공기계·기구 선정 등
- (5) 관리감독자는 우물통기초공법을 시공함에 있어 필요로 한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에 투입시키지 않아야 하며, 작업 중 근로자의 떨어짐 또는 끼임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6) 우물통 거치 전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, 선박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.